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29

발의연월일: 2022. 7. 22.

발 의 자:소병철·김승남·김회재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신정훈 · 오영환 · 주철현

홍영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결을 거쳐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명단을 포함하여 진실규명결정한 사례(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 확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특별법의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기 진화위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

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과거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조사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결정) ① 위원회는 「진실·화하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 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 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 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락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조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한 여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에는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태·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기	현 행	개 정 안
<u>등안 성부에는 그 유족을 말</u>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 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 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 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 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진 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 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 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하 여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로
		<u>다)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u>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